

『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사용자의 책임’ 조항 일부 개정(안 제17조제2항)
-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위탁 운영’ 조항 신설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강동문화복지회관 시설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, 복지회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손해배상 주체를 사용자에서 이용자까지 확대하여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해 사용자 및 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